



제270회 임시회  
2008. 5. 19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 서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5월 6일
- 회부일자 : 2008년 5월 9일

□ 제안이유

-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,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(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
  - (1)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
  - (2)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
- 나.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 삭제(안 별표 1)

## □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제명변경과 상위법률 조항 및 법령변경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, 의무 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행정구현과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 하는 것이며,
- 또한,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및 재학생과 관련한 수수료를 삭제하며, 교육수요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붙임 :**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